

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고찰*

황정임** · 최윤지 · 윤민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 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농업 경영이양, 영농 승계, 가족 승계, 제3자 승계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480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황정임) 전화: 063-238-2647; email: jihwang@korea.kr
565-851)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 서론

가족농 중심의 농업 구조에서 세대 간 경영이양은 농업을 유지하는 근간을 형성한다. 가족농은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족원의 노동력 공급으로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영농을 돕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고 부모의 농업을 승계 받아 다음 세대의 경영주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통적인 가족농이 이어져 왔다(강혜정, 2008).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수의 감소와 함께 영농승계자가 있는 가구 비율의 감소, 즉, 1990년 16.4%를 기록하던 것에서 2012년 8.9%로 감소한 추이¹⁾는, 과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위기감마저 갖게 한다.

최근 신규 농업인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가족 내 승계를 통해 농지, 농기계, 시설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함께 전수받는 것이 초기 비용 및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가족 내 농업 경영의 승계는 개별 농가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이성호 & 김정호, 1995). 물론 가족 내 승계에 있어서도 공평한 보상 체계 작동, 관계와 경영의 분리가 어렵고, 가족 구성원 간 불화가 경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강경하 & 이영석,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농을 물려받아 성장시켜 나갈 영농승계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효과적인 경영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농정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 1990년 농업총조사, 2012년 농업조사.

한편, 승계자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3자 경영이양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외에서도 규모가 커서 초기 위험이 큰 농가를 중심으로 제3자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 만큼, 국외 사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이양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여러 형태와 국내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한 후, 국외 제도를 다루고자 한다. 승계의 주요 형태인 농가 경영주-자녀 간 승계 및 제3자 승계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조명하되, 국가에 따라 후계 세대로의 농업 경영이양이라는 폭넓은 정의에 준해 관련 제도를 포함시킨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2.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 및 형태

농가의 경영이양은 부모가 자녀에게 농업경영을 물려주는 것으로서, 재산·권리의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은퇴 및 승계자의 경영 자립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이다²⁾(이성호 & 김정호, 1995). 농가의 경영이양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농업의 주체가 후계 세대로 교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Yanagimura et al.(2012)는 신규 농업 희망자가 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크게 창업, 제3자 승계, 부모-자녀 간 승계 등의 3개 유형으로

2) 본고에서는 경영이양, 승계, 계승 또는 승계자, 후계자 등 유사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구분하여, 유형별 경영 자산 양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표 1).

〈표 1〉 유형별 농업 경영 자산 양도의 특징

구분	경영이양 자산 양도 형태		무형 자산 양도를 위한 연수 비용	경영 자산 양도의 위험성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경영 파탄	경영 승계 실패
창업	유상	- (자력 취득)	-	대	-
제3자 승계	유상	유상(원래) 무상(실제)	필요	대 (경감 가능)	대
부모- 자녀간 승계	무상	무상	잠재적	소	소

※ 자료: Yanagimura et al(2012)

독자적으로 농업을 창업하는 경우, 신규 농업 창업자가 기존 농업인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농업 경영 자산은 토지, 농기계와 같은 유형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제3자 승계, 또는 부모-자녀 간 승계는 유형의 자산과 더불어 기존 농업인이 취득한 지식과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승계를 통한 신규 농업 참여자의 경우 창업에 비해 무형 자산의 결핍으로 인한 경영 파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장점이 있다. 단, 제3자 승계의 경우 부모-자식 간 승계에 비해 경영주와 승계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어 경영 승계 실패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Errington(2002)은 부모-자녀 간 경영이양 형태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농장 의사결정 권한 공유 여부, 자녀 세대의 독립된 농장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2). 그러나 실

제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훨씬 다양하며, 경영이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1997년 조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독립된 농장을 관리하지 않고 농장 경영에도 관여도가 낮은 Farmer's boy 형태의 비중(32.3%)이 높은 반면, 캐나다에서는 10% 미만에 그치는 등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표 2〉 농업 경영이양 유형

구분	농장(home farm)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자녀 세대 독립된 농장 보유 여부
Father-son Partnership	많음	미보유
Separate Enterprise	많음	보유
Farmer's Boy	적음	미보유
Stand-by Holding	적음	보유

※ 자료: Errington(2002)

강경하 & 이영석(2008)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어떻게 승계하느냐에 따라 일시에 농장경영 전체를 승계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농장경영을 승계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3. 국내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를 대상에 따라 경영주 대상, 승계자 대상, 그리고 경영주와 승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농업 경영이양 관련 지원제도

구분		내용
경영주 대상	경영 이양 직불 보조금	-1997년 도입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보조금(ha당 연 300만원) 지급 -65~70세 이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연령에 따라 6~10년까지 지급
	농지 연금	-2011년 도입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형 역모기지론 -농지소유자 본인 연령 만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함 -대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며, 농지는 경작 및 임대 가능
승계자 대상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1980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으로 시작 -만 18세~45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신규후계농 또는 창업농을 대상으로 창업기반 조성비용 및 농업 교육·컨설팅 지원 -영농 무경험자이면서 승계자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을 위한 서면 평가지표에서 가점이 인정됨
	상속세 감면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를 감면받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음
경영주- 승계자 대상	가족 경영 협약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본의 민간운동에서 착안하여 농촌진흥청에서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주도적으로 추진(최윤지 & 이진영, 2008)한 바 있으나, 정착되지 못함 -강혜정(2007), 강경하 & 이영석(2008)은 영농승계자의 지위 보장 및 순조로운 경영이양의 해법으로서 ‘가족경영협약’을 제안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경영이양 관련 제도는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농지연금 등 은퇴 이후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대부분이나,

금액이 적어 노후 생활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김정호 등, 2007; 최경환, 2012). 또한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제도의 경우 은퇴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수석, 2008).

승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지원 제도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역시 경영이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 대상에 신규창업농뿐만 아니라 가족농의 영농승계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영농승계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강혜정, 2008). 또한 자금지원에 치중된 정책으로서 전문적 인력 육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마상진 등, 2010). 이외에 승계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농의 구성원 간에 농업 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가족경영협약’을 통해 원활한 경영이양을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경하 & 이영석, 2008; 최윤지 & 이진영, 2008).

이와 같이 국내에서 농업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족농의 경영이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이양 관련 지원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영이양 지원제도의 수립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경영이양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럽권의 6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북미권의 2개국(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여 총 9개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유럽권의 경우 개별 국가 단위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운용되는 제도를 포함하였다. 아시아권의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본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유럽

4.1.1.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사회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유럽 국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유지를 위해 농업의 후계 세대 계승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Reeve & Stayner, 2006; Bika, 2007). 이는 농가 경영주-자녀 간 계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영주의 은퇴와 신규 진입자의 영농 정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 유럽 이사회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조기 은퇴 프로그램(Early Retirement Scheme)'은 우리나라의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과 유사한 제도로서, 55세 이상 농업인 또는 은퇴 시기가 10년 미만 남은 농업인들의 조기 은퇴를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 승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제도이다.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평균적인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을 그만두는 농장주에게는 매년 최대 18,000유로에서 총 180,000유로, 영농을 그만두는 농장 근로자에게는 매년 최대 4,000유로에서 총 40,000 유로를 지원한다. 실제 지원 금액은 상기 규정 범위 안에서 EU 회원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

며, 농업을 승계할 청년 농업인은 연령(18세~50세), 일정 수준 이상의 영농 경력 및 영농 소득 등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의 경우 EU의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따라 조기 은퇴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나, 잉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 프로그램의 경제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행하지 않는 등, 모든 EU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Bika, 2007).

두 번째로 유럽 이사회 규정 제22조에 근거한 '정착 보조(Installation Aid)' 제도는 신규 영농 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 예비농업인에게 최대 55,000유로의 금액을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정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농업을 주 직업으로 하고 농업에 필요한 자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40세 미만의 신규 농업 경영주로 제한된다.

4.1.2. 영국

영국의 농업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지원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경영주 대상 지원 제도로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은퇴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로, 은퇴 농업인을 반-은퇴자(semi-retirement)와 완전-은퇴자(full-retirement)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van der Veen et al., 2002).

승계자 대상 제도로는 상속세 감면 제도가 있다. 부모가 사망한 이후 자녀가 농업을 물려받는 경우, 농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Agricultural Property Relief)과 일반 사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Business Property Relief)이 동시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경우 농업 승계 시 납

부하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영국에서는 1명의 승계자가 부모 세대의 농업 기반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 관례이다. 승계자 외의 다른 자녀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다른 자녀에 대한 교육, 부양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계자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된다(Errington, 2002; van der Veen et al., 2002).

한편, 잉글랜드의 콘월 지역에서는 경영주-승계자를 대상으로 ‘Fresh Start Initiative’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Ingram & Kirwan, 2011). 이 제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행된 것으로, Joint Venture³⁾의 형태를 통해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목표는 1)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에게 장기간 사업의 건전성 및 활력

〈표 4〉 영국 Fresh Star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매칭 (Matchmaking)	신규 농업인을 유휴 농지나 Joint Venture 희망 농업인과 연결
사업 지원 (Business Support)	Joint Venture에 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멘토링 (Mentoring)	신규 농업인에 대한 개별 상담 제공
교육 (Training)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
은퇴 및 경영이양 계획 (Retirement and Succession Planning)	은퇴 농업인의 은퇴 및 경영이양 계획 수립 지원
농촌 주택 공급 (Rural Housing Provision)	신규 농업인의 거주지 정보 알선
금융 지원 (Financial Engineering)	대부자금을 통한 금융 지원

※ 자료: Ingram & Kirwan(2011)

3) Joint Venture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신규 농업 희망자가 구성하는 계약구성체로서, 파트너십(partnerships), 공유농업(share farming), 계약농업(contract farming) 등의 형태가 있다.

을 보장하고, 2) 기존 농업인에게 발전과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3)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명예로운 은퇴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호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존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 모두 부담을 느끼는 것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기의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Fresh Start Initiative'의 주요 내용은 표 4과 같다.

4.1.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이래 농업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인의 연령대를 보다 젊은 세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승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Errington, 2002; van der Veen et al., 2002).

첫 번째로 상속세 감면 제도는 모든 농장 기반이 농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양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농장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농업을 물려주는 은퇴 농업인이 작성한 농장의 대차대조표와 승계자가 새로이 작성한 농장의 대차대조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후불임금(deferred wage) 청구 제도는 농가 자녀들이 18세 이후 부모의 농장에서 무상으로 일한 경우, 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농업 승계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한 농가 자녀들이 농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농장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불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간 2,080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2/3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최대 10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농업자금 대출 제도가 있다. 농업을 승계한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이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3.5% 수준이다. 1인당 최대 95,000유로,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141,800유로까지 대출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소득세 감면 및 정착 지원금 보조 제도가 있다. 정착 후 60개월 동안의 기간에 한하여 젊은 농업인들에게 실제 소득의 50%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며, 5년간 사회보험금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단 사회보험금 감면 규모는 첫 해 65%에서 5년째 되는 해에 15%로 점차 줄어든다. 또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의 경우 농촌법에 따라 농촌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규모는 농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와 함께 농촌에 정착한 경우 산간 지역은 16,500~39,500유로, 비선호 지역은 10,200~22,600유로, 그 외 지역은 7,900~25,2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승계자가 없는 농업인과 정착을 희망하는 젊은 농업인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이들을 연결해주는 'Initial Installation Directories', 농업 경영이양 가능성이 낮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원 제도인 'Land Support Programme for Farm Take-overs'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수준의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에서는 오래된 빈집을 수리하여 신규 농업인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1.4. 독일

독일의 경우 부모 세대의 연령에 따라 농업 경영이양의 형태가 달라진다(van der Veen et al., 2002). 부모 세대 농업인의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65세까지 농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경우, 승계자는 농장의 일을 돕는 일손의 역할만 하게 된다. 부모 세대 농업인의 연령이 65세가 되면,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이양할 경우 특별농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승계자가 부모가 65세가 되기 전에 농업 경영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농지의 일부

를 임차할 수 있다.

신규 농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Agrarinvestitions Förderungs Programm(AFP)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12,000유로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최대 5%의 금리 인하 혜택 등이 제공된다.

독일의 농업상속법과 농업 승계자 지원제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표 5).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농업 승계자가 희망할 경우 형제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장을 일괄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표 5> 독일의 지역별 경영이양 관련 제도

구분	지원 내용
Höfeordnung 지역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 농업 교육 수준과 농장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 가운데 한 명을 골라 모든 농업기반을 이양 - 농업 승계자는 농장의 가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다른 상속자에게 보상해야 하며, 부모를 사망시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승계자가 20년 이내 농장 매각시 다른 상속자들이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음
Anerbengesetz 지역 (브레멘, 헤센,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일부 등)	- Höfeordnung 지역과 유사한 상속법이 적용되나, 농장 자산에 대한 가치 감정과 더불어 농장의 잠재적 가치를 추가로 평가하여, 보통 같은 자산을 가진 Höfeordnung 지역의 농장보다 높은 가치 감정 결과 도출
Civil code 적용 지역 (바이에른, 베를린, 자를란트, 바덴-뷔르템베르크 일부 등)	- 경영이양은 주의 민법(Civil code)에 따라 집행되며, 부모 세대 농업인이 생전에 상속 방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 이양 - 만약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 경영 의지가 있는 승계자가 법정에서 상속 권리를 요구할 경우 독점적으로 모든 농장 자산 상속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상속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함

※ 자료: van der Veen et al.(2002)

4.1.5. 스페인

스페인 농업인들의 특징은 대출을 통해 농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거

린다는 것이다(van der Veen et al., 2002). 스페인 농업인들은 꾸준한 저축을 통해 농업 규모를 확장해 나가며, 신규 농업인들 역시 대출을 받기보다는 장기간의 농업 경영이양 과정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부모 세대의 농업 경영을 도우며 승계를 준비하다가 서서히 농업을 물려받게 된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는 정착 지원이나 면세 혜택보다는 농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 정부는 물려받은 농업을 발전시키거나 현대화하는 데에 매진하는 신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 투자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프로젝트를 단위로 하며, 신규 농업인이 제안한 24,000유로 규모 내의 프로젝트 1개 건에 대하여 최대 2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나 공유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총 176,000유로, 법인체에 대해서는 회원 수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각각에 대해 176,000유로를 지원한다.

4.1.6.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승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체계로 ‘maatschap’⁴⁾이라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Errington, 2002; van der Veen et al., 2002). ‘maatschap’은 경영주와 승계자가 경영이양 기간 동안 제휴를 체결하는 것으로, 경영주가 주요 농업자산의 이양을 주도한다. 승계자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모든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휴 기간은 농업 자산이 많을수록 길어지는데 보통 10~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휴한다. ‘maatschap’은 경영이양의 모든 과정에서 승계자가 경영주와 동일한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경영이양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이한 제도로

4) 공동, 협력, 제휴, 파트너십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 Errington(2002)의 분류 중 'partnership'에 해당되는 형태이다.

van der Veen et al.(2002)은 'maatschap'에 대해 부모 세대로부터 승계자의 독립과 가족관계 변화를 상징하는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에 위계적인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경영이양이 이루어졌다면, 'maatschap'은 경영주와 승계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 경영이양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계자는 안정적인 지위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고, 경영이양의 안정성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농업을 물려받으려 하게 된다.

이밖에 모든 농업 자산이 경영주에게서 한 명의 자녀에게로 이양될 경우 자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단,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에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4.1.7.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매년 약 800명의 인구가 농업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정착하는 평균 연령은 29세이다(van der Veen et al., 2002). 제3자에 대한 농업 경영이양보다는 가족 중심적인 경영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의 절반은 가족으로부터 농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농지를 획득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자본 집약적인 농업 구조로 농지를 획득하는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 경영이양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다(Blanc & Perrier-Cornet, 1993; Ross Gordon Consultant SPRL, 2000; van der Veen et al., 2002). 부모에게서 농장을 물려받더라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장의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농업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초기의 경영이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덴마크 농업인들의 부채 수준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경영이양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나 덴마크에는 아직 관련된 제도가 공식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승계자의 대부분은 부모의 농장이나 다른 농장에서 임금 노동자로서 농업을 시작하고, 임금을 모아 소규모의 농지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한다. 최종적으로는 부모 세대가 은퇴하거나 사망한 후에 부모 세대의 농장을 매입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농업 경영을 완전하게 승계하게 된다(Blanc & Perrier-Cornet, 1993).

정부에서는 단일 상속자가 모든 농장 자산을 물려받도록 하여 농장을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때 다른 자녀나 상속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없으나, 대신 농장의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부모에게 지불하고 농장을 물려받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4.2. 북미

4.2.1. 미국

미국의 경우 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NFTN)을 중심으로 각 주의 경영이양 지원 센터가 연결되어 있다. NFTN에서는 농업 경영이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자료와 사례를 공유하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각 주 농업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 센터는 각 주의 특성에 맞추어 은퇴 농업인(또는 은퇴 희망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또는 희망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Cressman, 2000; Reeve & Stayner, 2006; 마상진 등, 2010).

NFTN은 아이오와주립대학의 신규농업인센터(Beginning Farmer Center)를 원형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1994년 Exten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래 농업인들이 신규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을 이양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 목적은 신규 농업인 교육, 은퇴(희망) 농업인 요구 분석, 승계자가 없는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연결 등이다.

신규농업인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Farm On' 프로그램은 승계자가 없는 은퇴 농업인 1명당 약 10명의 신규 농업인을 연결하여, 적절한 승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Farm Savvy Manual'이라는 경영이양 매뉴얼을 제공하여 경영이양 과정을 상세하게 지도하고 있다.

신규농업인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아이오와주 외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농업 경영이양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역시 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업 경영이양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주의 센터별로 독자적인 경영주-승계자 연결 프로그램, 단기 및 장기 경영이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뉴얼 책자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네티컷, 메인,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6개 주를 포함하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농업 경영이양 지원 네트워크 조직인 Farm Transfer Network of New England (FTNNE)를 창설하여, 보다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FTNNE는 'Land for Good'과 같은 비영리단체와도 연계하여 신규 농업인 및 농업 희망자, 기존 농업 경영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이양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1.2. 캐나다

캐나다 퀘벡(Quebec) 주에서는 농업 경영이양과 관련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Resource Center for Farm Establishment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 내 11개 지역마다 이사회와 농업인들로 구성된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센터는 주의 코디네이터가 관리한다 (Cressman, 2000). 각 센터에는 중재, 협상, 금융지원, 인간역학(human dynamics)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으며, 경영이양 타당성 분석, 중재, 전략 계획 수립, 정보 제공,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보통 2~3년 단위의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실제 경영이양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이 기간이 종료되면 각 농가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에서는 농업 경영이양 계획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는 경영이양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이양 관련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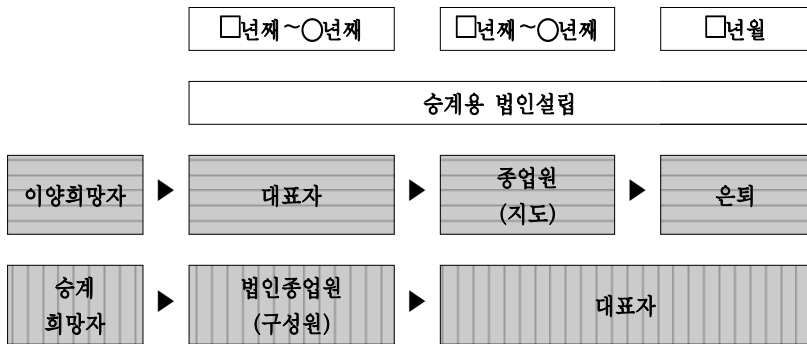
4.3. 일본

승계 유형에 따른 일본의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 간 승계 시, 승계자 대상 제도로는 ‘청년 취농 보조금’이 있다. ‘청년 취농 보조금’은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녀가 부모 밑으로 돌아와 취농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분 경영을 하거나 부모 밑에서 일한 지 5년 이내에 경영을 승계한다면 일정 조건을 갖추는 자에 한하여 연간 150만 엔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경영주와 승계자의 상호 협약을 통해 경영이양을 추진해 나가는 ‘가족경영협약’은 경영주와 승계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승계자의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데

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창구 상설, 전문 담당자 배치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균분상속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농업인인 부친이 자녀와 계약을 맺거나, 비농업인 자녀가 현금으로 보상받고 현물인 농지나 농업용 재산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가족 간 계약을 맺는 등이 가족경영협약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송재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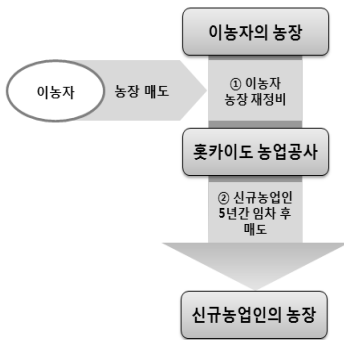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3자 승계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제3자 경영승계사업’이 있다. ‘제3자 경영승계사업’은 농업 경영을 이양하고자 하는 농가와 신규 농업 희망자를 매칭(matching)하여, 초기에는 연수를 통한 기술 승계를 진행하고 최후에는 사업 자산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주와 신규 농업 희망자 사이에 고용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주와 승계자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원활한 경영승계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법인 설립을 이용한 승계 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 농업경영승계사업 안내 브로셔(일본 농업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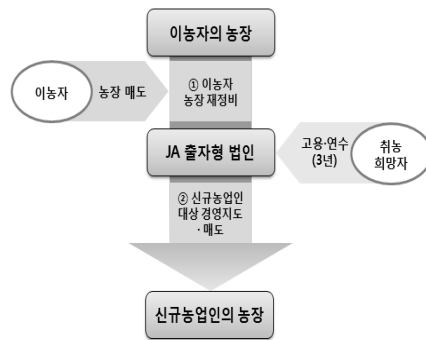
〈그림 1〉 승계법인설립에 따른 이양 방식

또한 홋카이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3자 승계 사업으로 1982년부터 시작된 ‘농장리스사업(Higashiyama, 2012)’이 있다. 이는 후계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농업 경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농업인의 농지 및 농업 자산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승계하려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 수리 및 보수 등을 거쳐 일정 기간(5년간) 빌려준 후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영형태에 따라 ‘낙농형’, ‘경종형(벼농사, 밭농사, 채소, 화훼)’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홋카이도 농업협동조합(JA)에서도 출자형 법인을 설립하여 이농자 농장을 잠시 보유했다가 그 법인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에게 기술 연수를 제공하고 농장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낙농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자료: Yanagimura et al. (2012)

〈그림 2〉 홋카이도농업공사의 농장 리스사업



자료: Yanagimura et al. (2012)

〈그림 3〉 홋카이도 JA의 농지중간보유를 통한 지원

5. 결 론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얻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Hwang & Choi(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 승계자 연령이 40세 이상이 되면서, 승계자 확정 및 경영이양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이양 시작 시기가 늦고,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효과적인 경영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캐나다 퀘벡(Quebec)주의 Resource Center for Farm Establishment 프로그램을 모델로, 경영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와 지원 기관이 2~3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이양 타당성 분석, 중재, 전략적 계획 수립, 정보 제공, 멘토링 등을 농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이양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이 필요하다. 경영주와 승계자가 제휴하여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경영이양을 진행하는 네덜란드의 'maatschap'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일본의 '가족경영협약'도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가족 기업의 특성상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보상 체계 작동 등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경영이양 모델이 필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후불임금 청구 제도도 승계를 완료하기까지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승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다. 가족 관계와 경영의 분리가 어려운 가족농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할 때, 경영이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승계자가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영국의 Fresh Start Initiative, 프랑스의 Initial Installation Directories, 미국의 Farm Link, 일본의 제3자 경영계승사업 등 전 세계적으로 영농 승계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은퇴 농업인과 승계자를 연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승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8.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한 작목, 규모 등을 선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3자 경영계승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은퇴 경영주와 신규 농업인 간 매칭을 통한 경영계승에는 많은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어 선진사례를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지의 균분상속 문제는 경영이양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세부적인 규정에서 차이는 있지만 승계자에게 일괄 상속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송재일(2011)은, 농지법 제22조에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상속재산의 균등분배라는 형평의 요청과 농업경영의 일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농업정책의 지향점이 상충하고 있어 해법이 쉽지 않은 과제이나, 경영자산의 일체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경하, & 이영석. (2008).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지원방안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829-848.
- 김수석. (2008).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농촌경제*, 31(4), 1-16.
- 김정호, 최경환, & 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 방안*.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박대식, & 김강호.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재일. (2011). 농지 상속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29(3), 163-206.
- 이성호, & 김정호. (1995).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2).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 대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지, & 이진영. (2008). *농가 가족경영협약 지도 매뉴얼*. 수원: 농촌진흥청.
- Bika, Z. (2007). The territorial impact of the farmers' early retirement Scheme. *Sociologia Ruralis*, 47(3), 246-272.
- Blanc, M. & Perrier-Cornet. (1993). Farm transfer and farm entry in the European Community. *Sociologia Ruralis*, 33(3-4). 319-335.
- Cressman, R. J. (2000). *Farm Family Succession in the 21st Century*. A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Business of the University of Guelph.
(<http://cressman.net/farm-family-succession-in-the-21st-century>)
- Errington, A. (1998).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managerial control in the farm-family business: a comparative study of England, France and Canada.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5(2), 123-136.
- Errington, A. (2002). *Handing over the reins: a comparative study of intergenerational farm transfers in England, France and Canada*. Paper

-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10th EAAE Congress, Zaragoza(Spain), 28-31, August, 2002.
- European Commission. (2005). Council Regulation(EC) No 1698/2005 of 20 September 2005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FRD).
- Glauben, T., Petrick, M., Tietje, H., & Weiss, C. (2009). Probability and timing of succession or closure in family firms: a switching regression analysis of farm households in Germany. *Applied Economics*, Vol. 41, pp.45-54.
- Hennessy, T. & Rehman, T. (2007). An investigation into factors affecting the occupational choices of nominated farm heirs in Ireland.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8(1), 61-75.
- Higashiyama, Kan. (2012). *Support system for encouraging beginning farmers entering dairy farming by local organization*. A paper presented on International Seminar on Intergenerational Farm Transfer, Hokkaido University, 21, November, 2012.
- Hwang, & Choi. (2014). *Succession decisions in Korean family farms*. A paper presented at 2014 FFTC-RDA International Seminar on Enhanced Entry of Young Generation into farming, 21-23, October.
- Ingram, J & Kirwan, J. (2011). Matching new entrants and retiring farmers through farm joint venture: Insights from the Fresh Start Initiative in Cornwall, UK. *Land Use Policy*, 28(4), 917-927.
- Lobely, M., Baker, J. R., & Whitehead, I. (2010). Farm succession and retirement: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1(1), 49-64.
- Mishra, A. K., El-Osts, H. S., & Johnson, J. D. (2004). *Succession in family farm busines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 farm sector*. Selected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AAEA Meeting in Denver, CO. August, 2004.
- Otomo, Y. & Oedl-wieser, T.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patterns in farm succession in Austria and Japan from a gender perspective. *Jahrbuch der Österreichischen Gesellschaft für Agrarökonomie*, 18(2), 79-92.
- Reeve, I. & Stayner, R. (2006). *Preparing entrants to farming: scoping programs*

- and strategies*. A report for the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Ross Gordon Consultants SPRL (2000). *The Future of Young Farmers in the EU*. Luxembourg.
- van Bommel, K. H. M., van der Veen, H., & Venema, G. (2004). Financial distress with family farm transfer in six European countries, *EuroChoices* 3(2), 18-23.
- van der Veen, H. B., van Bommel, K. H. M., & Venema, G. S.. (2002). *Family Farm Transfer in Europe : a focus on the financial and fiscal facilities in six European countries*.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 The Hague.
- Yanagimura et al. (2012) *A Guidebook for Farm Succession and Fresh Start in Dairy Farms*. Sapporo : Dairyman.

Received 25 September 2014; Revised 03 October 2014; Accepted 11 November 2014

An Implication of Policies for Farm Succession in Foreign Countries

Jeong Im Hwang · Yoon Ji Choi · Min Hye You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Abstract

Farm succession in the next generatio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ructure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for farm success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foreign policies and comparing it with Korean policies. The followings were derived from the comparison analysis. First, support is required in establishing master plans for farm succession from operators to successors. Second, i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effective model for farm succession. Third, an assistance policy for farm households without successors should be initiated. Fourth, the fragmentation of farmland ownership should be counteracted.

key words : Farm transfer, Intergenerational succession, Transfer to a third party



Jeong Im Hwang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s on the quality of rural life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 do, South Korea.
email) jihwang@korea.kr



Youn Ji Choi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 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Min Hye Youn is a research assistant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s on the rural development.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dbsakdls@naver.com